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재판외분쟁해결제도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지적재산권연구센터 제공
(소장 정 병 호)

1. 조정위원

(1) 조정위원의 위촉방법개선

유능한 조정위원을 많이 선발, 위촉하고, 조정위원들이 많은 경험을 쌓아 훌륭한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정위원 후보는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고, 산업자원부장관, 특허청장, 우수조정위원 등으로 선발위원을 구성하여 신중하게 심의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고, 선발기준에 대해서도 학력, 경력, 현재의 직무, 직위외에 그 사람의 주요업적, 특별한 능력, 법률적 안목, 성격과 인품, 사회적 평판 등을 잘 조사하고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조정위원에 대한 기초교육, 재교육 및 연수제도 확보

대안으로 특허연수원에 교육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분쟁조정관련 전문가, 학자, 실무가 등이 강사진을 구성하여 단기코스의 교육으로 조정위원에게 기초교육 및 정기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위원의 국제적 관련단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위원회 의 자체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하여 산업재산권분쟁법 및 조정기술에 관한 강좌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

(3) 조정위원의 정규적 참여방안

현재 산업재산권조정사건이 많지 않아 각전문분야별 조정경험자의 정기적 참여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으나 점차 조정사건이 많아지면 정규적인 각전문분야별 조정팀을 구성하여 경험이 많고 유능한 조정위원을 중심으로 월중 일정한 요일을 지정하여 정규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 실시시키는 개개의 조정위원의 경험과 훈련이 쌓이고 조정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도입 및 참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조정위원의 대우개선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발명진흥법시행령 제20조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수당에 대해

서도 정액수당외에 당사자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운 사실조사비용등을 특허청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장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2 조정제도

(1) 조정신청의 활성화유도 및 홍보확대

국민들 사이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존재 및 그 장점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데 당사자들로 하여금 소제기 대신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제도의 홍보강화가 필수적이다.

(2) 조정위원회 조정의 전문화, 효율화

각사건별 적합한 조정위원의 선정, 소송자료의 송부와 안내 및 연락, 통계 및 기타 관리 등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담당할 전담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고, 조정위원수당의 현실화, 사실조사 및 출장비지급에 관한 현실적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3) 지방 상공회의소 및 업종단체별로 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권장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지방에서 발생할 경우에 당사자들의 조정회의참가에 부담을 느끼고 분쟁이 주로 동종업종간에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종 업종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 상공회의소 및 업종 단체별로 자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특허청은 분쟁조정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조정위원

추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일본은 「가구 디자인 센터」에 자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4) 변리사의 조정제도 활용 유인제공

변리사수임료규정에 조정신청대리수임료를 포함토록 하여 조정제도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조정성립을제고방안

조정절차에서의 본인출석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6) 조정이론 및 조정기법 개발

조정성립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조정연수회, 조정사례발표회, 조정담당자회의 등을 통하여 효과적 조정방법과 경험을 교환하여 이를 연구할 것이 요망된다.

조정장이 당사자들로부터 미리 조정안에 승복할 것과 이의신청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7) 조정실 설치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정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기실도 설치하여 불가피하게 공개로 조정되는 것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8)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보장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특허청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의 보장에 미흡하고,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조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발명진흥법 시행령 제 12조 제1항)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위원의 수를 기술전문분야별로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둔다는 규정(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8조)만 있는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을 두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9)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정책건의권 등 보장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처리과정에서 전문적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으므로 이를 특허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허정책에 관한 정책의 개선을 건의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0) 분쟁당사자의 알권리의 보장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나 특허청 공무원등을 위촉하여 분쟁조사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8조 제1항), 분쟁당사자측에서는 분쟁과 관련된 정보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공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분쟁당사자측에 정보제공청구권이나 자

료열람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 공정한 조사, 감정기관의 확보

조정 결과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조사, 감정기관의 선정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기관의 요건을 미리 정해두거나 조사, 선정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연구관제도, 조정연구기관설치

조정의 성립률 제고 및 조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 조정담당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사실관계의 조사 및 이를 통한 가장 합리적 조정권고안의 제시가 조정활성화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현재 모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를 적어도 1인은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책임 있는 조정을 수행하게 하거나 또는 현재의 비상임위원체제를 고수하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연구관과 같이 조정연구관제도를 도입하여 조정권고안의 제시를 위한 전단계적인 사실조사, 조정선례나 법원의 판례 검토 및 당사자의 접촉을 통한 사전절충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비상임조정위원을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 긴급조정제도의 도입

산업재산권분쟁이 당사자간의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당해 분쟁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당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4) 강제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가 오로지 감정적인 대립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가 사건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지역적인 의견의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있지 않지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 조정위원의 관여로 분쟁해결의 기준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등에는 강제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업재산권도 공익적 성격, 공권적 성격이 강해지는 추세이므로 민사조정에서의 강제조정제도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에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5) 제한적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조정전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산업재산권심의 조정위원회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것은 다 해결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몇 번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전체적으로 분쟁해결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전치를 선택적으로(임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3 조정절차의 효율적 운영

(1) 조정절차의 집중심리화

(2) 조정절차의 분리가능성

(3) 조정내용의 이행확보

(4) 조정조서에 화해와 동일한 효력인정

4 중재제도의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산권분쟁에 대하여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의 산업재산권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의 산업재산권정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現在の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도 산업재산권분쟁중재·조정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조정령역의 확대

(1) 조정대상의 확대필요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외국에서 처럼 조정대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방향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법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분쟁해결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이 필요하고, 분쟁해결기구 설립방안으로서 ①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안, ② KRNIC에 분쟁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③ 대항상사중재원에 회부하는 방안 등이 있지만 도메인 네임도 상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